

운동장이용협의회 공동 회칙 [23.08.21 개정, 23.08.26 적용]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운동장이용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동장 사용권 배분을 통해 학우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내에 둔다.

제4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본교 각 운동동아리의 대표자 1인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운영 세칙)

공동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운영 세칙을 따른다.

제2장 운영

제7조 (의장)

본회의 의장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장 중 한 명이 된다.

제8조 (업무 및 권한)

본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운동장 사용시간 배정방식에 대한 심의 및 의결
2. 기 배분된 운동장 사용시간 조율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제9조 (회의)

- ① 본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수강신청 전 1회로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본회의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④ 본회의 소집은 5일 이전에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⑤ 본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된다.

제10조 (의안상정)

의안상정은 본회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배정방식에 관한 의안은 회의 시작 24시간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결)

본회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운동장 사용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동장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동아리가 조율 안건을 상정할 경우 출석위원 1/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운동장 사용 규정

제12조 (개방원칙)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운동장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간과 기간을 정하여 운동장과 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 허가)

- ① 정규 학기 중 운동장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신청서를 사전에 총학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단체별 사용 시간의 경우 본회를 통해 협의한다.
- ② 주말 및 공휴일의 사용은 신청자 중 추천하여 사용 허가한다.

③ 방학 중 사용은 학생처에서 공지한 시일부터 선착순 방문 및 신청으로 진행하며, 배분 시간에 대해서는 학생처에서 조율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 허가의 기준)

- ① 운동장은 본 대학의 체육수업과 대학에서 주관하는 대내·외 행사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운동장 사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생 체육수업과 학사업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2. 대학에서 주관하는 대내·외 행사
 3. 교내 학생 및 교직원 동아리 활동
 4. 기타 주관부서에서 사용 허가된 행사

제15조 (사용 허가의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한다.

- ① 수업(시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
- ③ 시설의 개·보수
- ④ 기타 긴급하거나 중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16조 (운동장과 관련된 규칙)

- ① 운동장은 성균관대학교 재학생에게 우선 사용권이 있으며, 학생처와 운동장이용협의회에서 공지한 학기별 규칙에 의거한다.
- ② 신청서와 서약서를 요하는 경우, 제출을 필수로 하며 보고된 인원과 실제 인원이 상이하지 않도록 한다.
 1. 졸업생 포함 외부인이 추가될 경우,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학생처에 1일 전까지 제출한다.
- ③ 운동장 및 주변 시설 이용 시 준수 사항
 1. 운동장 내 흡연 및 음주는 금지한다.
 2.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다.
 3. 애완동물 등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없다.
 4.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음료 이외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5. 발생된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하며, 투기 행위를 금지한다.
 6.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나 복장의 착용을 금지한다.

- ④ 동조 제3항 각 호에 명시된 사항 위반 시 다음과 같이 경고를 부여한다.
 1. 경고 1회시, 운동장이용협의회장과 운동동아리 대표 간 면담 진행 및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한다.
 2. 경고 2회시, 운동장이용협의회에서 퇴출한다.
 3. 운동장이용협의회 퇴출 시, 해당 학기 남은 일자와 다음 학기에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한다. (단, 방학기간은 직전 학기에 포함한다.)
 4. 경고는 최초 경고일 기준 1년간 누적하여 적용한다.
 5. 최초 경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동안 추가적인 경고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최초 경고일 이후 1년 이내에 추가로 경고를 부여받은 경우, 최초 부여받은 경고는 소멸하지 않고, 이후 경고일 기준 1년간 누적하여 적용한다.

제4장 회칙 개정

제17조 (발의)

본회 회칙개정 발의는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서면 발의에 의해 발의된다.

제18조 (의결)

- ① 회칙개정안의 의결은 본회의 정기회의에서 의결한다.
- ② 회칙개정안의 의결은 본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공포)

운동장이용협의회장은 개정된 회칙을 회칙개정안 가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 3일 이후에 시행한다.

제2조 (관례의 준용)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독립성의 보장)

이 회칙은 각 캠퍼스의 독립성을 보장한다.